|  |  |  |
| --- | --- | --- |
| **1.8.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2005년 1월 4일 세관총서 령 제124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세무정책의 철저한 실시를 보장하고 세관의 세수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의한 세금징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세수를 보장하며 납세의무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례"라 약칭함)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징세업무는 정확한 분류, 정확한 가격추산, 세율에 의한 세금산정, 적법한 세금감면, 엄격한 세금환급과 세금보조, 적시 입고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3조** 수출입관세,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의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화물의 수입세와 선박톤세의 징수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법규정에 의해 집행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법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다하고,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상업비밀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해야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에 상업비밀유지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울러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단, 상업비밀을 이유로 삼아 세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2장 수출입화물세금의 징수**  **제1절 신고와 심의**  **제5조** 납세의무인은 화물 수출입시 법에 의해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의해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가 외국문자인 경우 세관이 필요로 할 때 마땅히 중문번역문을 제공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감면세화물 수출입 시, 납세의무인은 또 주관세관이 서명 발급한 "수출입화물 징면세증명"(이하 '징면세증명'이라 약칭함, 서식은 별지1 참조)을 제시해야 한다. 단, 본 방법 제72조에 열거된 감면세 화물은 제외한다.  **제6조** 납세의무인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서 정한 상품분류, 과세가격심사와 원산지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상품명칭, 세칙코드번호(상품코드번호), 규격, 가격, 운임과 보험료 및 기타 관련비용, 원산지, 수량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심사 확정하기 위해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관련규정에 의한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상품의 명칭, 규격, 세칙코드번호, 원산지, 가격, 교역조건, 수량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은 항구통관과 화물수출입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화물통관 과정에서 그 신고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하며, 화물이 통관된 후 그 신고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등의 진실여부와 정확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제9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심사, 확정을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조사확인, 화학분석,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관련기업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 세칙코드에 오차가 발견된 경우 세관은 상품분류 관련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재 확정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가격이 거래가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 관련규정을 근거로 별도 가격을 추산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거나 화물에 대한 실제조사 또는 기타 관련증빙서류를 심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관의 원산지관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확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면세 청구 또는 신고내용이 감면세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규정에 의해 과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관규정을 위반한 허위신고, 기만신고 행위가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 세관조사기관 또는 밀수단속기관에 인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인은 화물 실제 수출입전, 규정에 의해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분류, 가격사전심사 또는 원산지 사전 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확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화물이 실제 수출입 될 때 이를 인정해야 한다.  **제2절 세금의 징수**  **제11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세칙코드번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세율과 환율에 근거하여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제12조** 세관은 "관세조례"의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수출세율, 관세쿼터세율 또는 잠정세율 및 반덤핑조치, 반보조 조치, 보장조치의 실시 또는 보복성 관세 등의 세율적용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의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이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화물 도착 전, 세관의 비준을 거쳐 미리 사전신고를 한 경우, 당해 화물을 적재한 운송도구 입국신고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轉關화물수입 시, 指運地세관의 당해 화물 수입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한다. 화물이 指運地 도착전 이미 세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사전 신고 처리된 경우, 당해 화물을 적재한 운송도구의 指運地 도착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출 轉關화물의 수출은 指運地 세관이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 접수 일에 실시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입화물을 일괄신고 할 경우에는 매회 화물 수출입 시 세관의 당해 화물 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을 경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법에 의해 경매 처분하는 수입화물은 세금 산정 시 당해화물 적재 운송도구의 입국신고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의 추징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행위 발생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위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동 행위 발견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14조** 입국신고를 하고 아울러 이미 통관된 보세화물, 감면세화물, 임대화물 또는 수출입 신고를 하고 아울러 이미 통관된 임시 수출입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통관신고서를 재차 작성하여 납세수속과 관련수속을 신청한 일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세화물이 허가를 받아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보세창고화물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판매된 경우  (3) 감면세화물이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4)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 수출입화물이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은 경우  (5) 임대수입화물이 세금을 분할 납부 한 경우  **제15조** 수출입화물의 세금을 보충징수하거나 환급할 경우 본 방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16조** 수출입화물의 가격 및 관련비용을 외국환으로 계산할 경우, 세관은 당해 화물 세율적용일의 적용환율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과세가격은 사사오입 방식으로 최소단위 전(分)까지 계산한다.  세관이 매월 적용하는 환율은 전월 세 번째 수요일(세 번째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고시된 중국인민은행 외국환대 인민폐의 기준 환율이다. 기준환율 이외 기타의 외화로 계산된 경우 동일 시간대에 중국은행이 고시한 현찰 매입가와 현찰매도가의 평균치(인민폐 元단위 뒤에 사사오입 방식으로 네자리 소수까지 남긴다)를 적용한다. 만약 상기 환율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여 세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 환율을 규정하고 대외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세관은 "세관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종가, 종량 또는 국가 규정의 기타의 방식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종, 세목, 세율과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을 계산 징수한다.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은 아래의 계산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종가 관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관세율  종량 관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화물수량×단위당 관세액  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실제 징수하는 관세액+실제 징수하는 소비세액)×부가가치세율  종가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실제징수 관세액)/(1-소비세율)}×소비세율  종량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화물수량×단위당 소비세액  **제18조**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화물이 실제 수입되고 또한 세관 현장심사 업무가 완료된 이후 적시에 세금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물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확인 후 세금 납부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세금 납부서를 수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금납부서를 받은 후 수령 수속한다.  **제19조** 세관세금납부서는 일식6면(서식 별지2참조)이다. 제1면(영수증)은 은행이 대금을 수취하고 날인한 후 세금 납부업체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2면(지불증명)은 세금 납부업체의 거래은행을 지불증명원으로 한다. 제3면(대금수취증명)은 대금을 수취한 국고를 수입 증명원으로 한다. 제4면(확인서)은 국고에서 날인한 후 세관 재무부서에  반환한다. 제5면(확인용)은 국고에서 대금을 수취한 후 관세 전용납부서는 세관에 반환하고, 세관 대리징수세 전용납부서는 현지 세무기관에 송부한다. 제6면(보관용)은 발행처가 보관한다.  **제20조**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행일부터 15일 내 지정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관은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완납 일까지 매일 체납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체납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내 지정은행에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금 납부서 서식은 세금납부서 서식과 동일하다.  납부기한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등과 같은 휴일이거나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지난 첫 번째 근무일를 만기일로 한다. 국무원에서 휴일과 근무일을 임시 조정한 경우 세관은 조정후의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제21조** 관세,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 체납금 등은 인민폐로 산정하고 사사오입 방식으로 전(分)까지 계산해야 한다.  체납금의 최소 기준액은 50원이다.  **제22조** 은행의 세금영수필 확인일은 납세의무인의 세금 완납일로 한다. 납세의무인은 은행에 세금을 완납한 후 적시에 은행의 세금영수필 업무 인장을 날인한 세금 납부서를 발행 세관에 발송하여 검사확인 받아야 하며, 세관은 이를 증거로 말소수속을 한다.  세관은 은행이 규정대로 세금 전액을 국고에 적시 입금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면 국고에 관련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금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발행세관에 세금납부서의 재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내 확인하고 아울러 재발급해야 한다. 세관이 재발급한 세금납부서의 내용은 원본과 일치해야 한다.  세금을 완납한 후 세급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금 완납일로부터 1년 내 발행세관에 세금납부 사실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납부 사실을 확인한다. 단 세금납부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24조** 불가항력 또는 국가 세수정책 조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신고지역의 직속세관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종속 세관에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이 실제로 수출입 될 때, 납세의무자가 납세전의 화물통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관에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직속세관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종속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세금 지연납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세금의 지연납부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 기한을 결정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30일 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일 연장할 수 있다.  세금 연기납부 기한은 화물 통관일로부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허용된 세금 연기납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연기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매일 체납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26조** 직속세관 또는 그 수권을 받은 종속세관은 심사를 거쳐 세금 지연납부를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3 일 근무일 내에 납세의무자에 통지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내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완납일까지 매일 체납 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27조** 벌크수출입화물이 과다 선적 또는 과부족 선적인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1) 과다 선적 수량이 계약서, 송장에 표기된 수량의 3% 미만인 경우 또는 과부족 선적인 경우, 세관은 확인된 화물단가에 근거하여 계약서 또는 송장에 표기된 수량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2) 과다 선적량이 계약서, 송장에 표기된 수량의 3% 이상인 경우 세관은 획인된 화물단가에 근거하여 실제 수출입량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제28조** 납세의무인, 담보인이 세금납부기한 만기일부터 3개월 이상 세금 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세금 납부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할 기미가 뚜렷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 세수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조치와 세수보전 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특수 수출입 화물세금의 징수**  **제1절 무상 변상화물**  **제29조** 무상 변상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수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상변상 화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무상변상 화물이란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이후 제품의 파손, 과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미달 등의 원인으로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업자 또는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보상 또는 교환하는 원 화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계약에 부합되는 화물을 말한다.  **제30조** 납세 의무인은 원 수출입 계약서에 규정된 배상청구 기한내 원화물 수출입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 세관에 무상 변상 화물의 수출입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납세 의무인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입 신고 시, 하기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원 수입화물 세관신고서  (2) 원 수입화물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수출신고서 또는 원 수입화물을 세관에 교부하여 처분한다는 화물포기 처리증명서  (3) 원 수입화물의 세금납부서 또는 "징면세증명"  (4) 매매 쌍방이 체결한 배상청구 협의서  원 수입화물의 수량 미달로 무상변상 화물을 수입할 경우 전관 제(2)항의 증빙 서류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또 자격을 갖춘 상품검역 기관이 제공한 원 수입화물의 파손, 수량미달, 품질불량 또는 규격미달 사실 검사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32조** 납세 의무인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출 신고 시, 하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수출화물의 세관신고서  (2) 원 수출화물을 국내로 반입한다는 수입신고서  (3) 원 수출화물의 세금납부서 또는 "징면세증명"  (4) 매매 쌍방이 체결한 배상청구 협의서  원 수출화물의 수량미달로 무상변상 화물을 수출할 경우 전관 제(2)항의 증명 서류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또 자격을 갖춘 상품검역기관이 제공한 원 수출화물의 파손, 수량미달, 품질불량 또는 규격 미달 사실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33조** 납세 의무인은 신고한 무상변상 수출입 화물이 반출 또는 반입되는 원 화물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관에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세관은 심사를 거쳐 이유가 정당하고 세칙코드번호가 일치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원 수출입화물의 적용 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동 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과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액이 원 수출입화물의 기 납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금의 차액부분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액이 원 수출입 화물의 기 납세액보다 적고 또한 원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화물 대금을 동시에 보상한 경우, 세관은 화물대금 보상부분에 따르는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화물 대금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세금의 차액 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무상보상 또는 교체된 화물의 수출입 신고 시 그 세칙 코드번호와 원 화물의 세칙 코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무상변상 화물 관련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출입화물의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제34조** 납세 의무자가 무상변상 화물 수출입 신고 시, 교체된 원 수입화물을 반출하지 않고 또 세관에 이양하여 처분하지도 않은 경우 또는 교체된 원 수출화물을 반입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무상변상 화물 수출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세율, 적용환율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 수출입 화물의 가격을 재 추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제35조** 교체된 원 수입화물을 국외로 반출 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교체된 원 수출화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2절 임대수입 화물**  **제36조** 납세의무자가 임대화물을 수입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납세 수속을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임대화물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임차계약서 및 기타의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임대수입화물은 입국일부터 임대기한이 만기되어 세관수속을 마무리하기까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를 일시 지불하는 납세 의무인은 임대화물 수입신고 시 납세수속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납세 의무인은 임대화물 수입신고 시, 첫 회에 지불해야 할 임대료 액수에 근거하여 납세수속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의 임대료 분할납부 신고 시의 납세수속은 매회 임대료지불후의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매회 임대료를 지불한 후의 제15일 에 적용된 당해 화물의 세율, 적용환율에 근거하여 상응한 세금을 징수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납세수속기한 만기일부터 납세의무자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과세금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한다.  **제38조** 세관은 반드시 임대 수입화물에 대해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인이 제때에 세관에 납세신고하도록 독촉하므로써 세금액이 제때에 충분한 금액으로 입금됨을 확보해야 한다.  **제39조** 납세의무인은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일부터 30일내 세관 감독관리 수속을 완료하고 임대수입 화물을 반출해야 한다. 임대수입 화물을 구입하거나 계속 임대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 필요한 세관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은 구입한 임대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구입신고 접수당일 당해 화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과세액을 산정한다.  임대수입 화물을 계속 임대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관에 임대연장 계약서를 제시하고 본 방법 제36조와 제37의 관련규정에 의해 납세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제40조**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39조 제1관 규정의 기한내 세관에 임대수입 화물 구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임대기한 만기후 제30일 당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납세액을 계산하는 외 또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부터 납세 의무인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39조 제1관 규정의 기한내 세관에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 연장관련 수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연장에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는 외 또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부터 납세의무인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41조**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 전 임대를 종지 한 경우, 그 임대기한 만기일을 임대 종지일로 한다.  **제3절 일시적인 수출입화물**  **제42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제43조** "관세조례" 제42조 제1관에 열거된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은 세관이 정한 기한 내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을 규정 기한 만기 후 반출 또는 반입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수출입신고 및 납세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한다.  **제44조** "관세조례" 제42조 제1관에 열거된 범위 외의 기타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수출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과  월 납세액을 확정하거나 또는 규정된 기한 내 화물의 반출 또는 반입 시,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산정기한은 60개월이다. 1개월 미만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금산정 기한은 화물 통과일부터 계산한다.  월 납세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월 관세액=관세총액×(1/60)  매월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액 =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세금 총액×(1/60)  본조 제1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이 규정 기한 만기 후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세관에 수출입 및 납세 신고를 하고 세액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5조**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이 규정기한 내에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규정기한 만기 전에 세관에 수출입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납세액을 징수하는 외 또 규정기한 만기일부터 납세 의무인의 납세신고 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46조** 본 방법 제43조- 제45조에서 지칭하는 "규정기한"이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의 반출 또는 반입 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제4절 보수를 위해 수출입되는 화물과**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  **제47조** 납세 의무인은 보수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의 수입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보수계약서 (또는 보수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수입 세금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한다. 보수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세관규정의 기한내 반출해야 한다.  보수를 위해 수입된 화물이 원자재, 부품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원자재, 부품의 수입신고 시 세관에 보수화물의 보수 계약서(또는 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계약서), 보수 화물의 수입신고서(보수화물과 동시에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시하고 수입세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된 원자재, 부품은 보수 화물의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수하고 남은 원자재, 부품은 보수 화물과 함께 반출되어야 한다.  **제48조** 납세 의무인은 수입되었던 보수화물 및 사용하고 남은 수입 원자재와 부품의 반출 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 및 수입 원자재, 부품의 원 수입 신고서와 보수 계약서(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 계약서)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당 증빙 서류를 증거로 보수화물 및 원자재, 부품의 수입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 담보의 관련 수속을 해제할 수 있다.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한 경우 보세화물 관련 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세관의 규정 기한 내 보수 화물을 반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49조** 보수를 위해 수입된 화물이 세관 허용 기한 내(연장기한포함. 하 동)반출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당해 화물 수입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제50조** 납세의무자는 보수를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수출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보수계약서(또는 보수조항이 포함된 원 수입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수를 위해 수출되는 화물은 세관의 규정기한 내 반입되어야 한다.  **제51조** 납세 의무인은 보수를 위해 수출되었던 화물의 반입 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원 수출 신고서와 보수 계약서(또는 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입 계약서), 보수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반출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수입세액을 산정한다.  세관의 규정기한 내 보수화물을 반입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에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입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2조** 보수화물이 세관의 허용 기한을 경과하여 반입된 경우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의 징세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 세금을 징수한다.  **제53조** 납세 의무인은 국외에서의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수출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위탁가공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출국가공 화물이 수출관세 징수 상품인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관에 수출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국가공 화물은 세관의 규정 기한 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제54조** 납세 의무인은 출국가공 화물의 반입 신고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원 수출 신고서와 위탁가공 계약서, 가공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반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수입세액을 산정하며 또한 당해 화물수출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 관련 수속을 해제한다.  세관의 규정기한 내 출국 가공 화물을 반입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 기한 만기 전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입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5조** 출국 가공 화물이 세관의 허용기한 내 반입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당해 화물 출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출국가공 화물 반입 시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세금을 징수한다.  **제56조** 본 방법 제47-제55조 에서 지칭하는 "세관규정기한"과 "세관허용기한"은 보수를 위해 수출입되는 화물과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관련 계약규정 및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관이 확정한다.  **제5절 반송화물**  **제57조**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수출 화물이 수출 통관일부터 1년내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수입신고 시 규정에 의해 관련 증빙 서류와 증명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반송되는 원 수출화물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58조**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수입화물이 수입 통관일부터 1년 내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수출신고 시 규정에 의해 관련 증빙 서류와 증명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쳐 반송되는 원 수입화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장 수출입 화물 세금의**  **환급과 보충징수**  **제59조** 세관은 세금의 초과 징수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 의무인은 세관통지 접수일부터 3개월 내  세금환급 수속을 해야 한다.  **제60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의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부터 1년내 과다 납부된 세금과 동 기간 은행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세관에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및 이자환급 신청 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환급신청서"(서식은 별지 3 참조)  (2) 원 세금 납부서와 세금 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61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 납부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은　세금 환급 신청시,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입화물의 세관 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화물 반출에 따르는 수출신고서  (4) 수하인과 출하인 쌍방이 체결한 반품 협의서  **제62조**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원 상태로 반입되고 아울러 수출로 인해 환급받았던 국내 관련세금을 재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환급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출 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화물 반입에 따르는 수입 신고서  (4) 수하인과 출하인 쌍방의 반품 협의와 세무기관의 국내 세금 재징수 관련 증명.  **제63조**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연고로 인해 수출되지 못하고 세관에 통관 철회를 신청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환급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 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환급신청서"  (2) 원 수출신고서와 세금납부서  **제64조** 벌크 수출입 화물이 과부족인 상태로 통관된 경우, 당해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과부족   부분에 대해 상응한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수입 또는 수출 과부족 부분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검증 증명서  (4)  환급 또는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65조** 수출입 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문제로 또는 본 방법 제64조의 규정 이외의 화물 수량 과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거기에 따르는 물품 대금을 배상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물품대금 배상금부분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 신청서"  (2) 원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물품대금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66조** 세관은 납세 의무인의 세금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납세 무인이 제시한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고 신청서류 접수일을 수리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5일 내 납세의무자에게 보충, 수정이 필요한 전부의 서류를 일괄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완전한 보충, 수정자료 접수일을 세금 환급신청 수리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61조, 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원 수입 또는 수출화물에 대한 품질불량, 규격미달 또는 파손, 수량 과부족 검증증명서 또는 기타의 관련 증명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세금환급신청수리일부터　３０일 내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통지하거나 또는 세금 환급불허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세금 환급비준 통지 접수일부터 3개월 내 세금 환급수속을 해야 한다.  **제67조** 세관은 세금 환급 수속시, 수입 반환서(서식 별지 4참조)를 발행하고 아울러 하기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동시에 초과징수 세금 부분의 이자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 환급 이자는 세관의 수입 반환서 발행일 당시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당좌예금 이율에 의해 계산한다. 이자계산 기한은 납세 의무인의 세금 납부일부터 세관의 수입 반환서 발행일까지이다.  (2) 이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경우 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징수한 체납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세금, 이자 환급이 국고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국고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정해진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의해 집행한다.  **제68조**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이후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세금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화물통관 일부터 1년 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제69조**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경우 세관은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을 누락한 경우, 세관은 화물 통관일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외, 또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 또는 화물 통관일부터 위법사실 발견일까지 적게 징수한 세액 또는 누락 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규정 위반으로 세관 감독관리에 속하는 화물에 대해 세금을 적게 징수하였거나 세금을 누락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하고 아울러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자로부터 규정위반사실 발견일까지 매일 적게 징수한 세액 또는 누락 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전관에서 말하는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란 납세 의무인의 규정 위반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당 행위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당 행위 발견일을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 한다.  **제70조** 세금을 보충징수 또는 추가징수 할 경우 세관은 세금보충징수고지서)(서식 별지 5참조)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보충징수고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세관에서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전관의 규정기한 내 세금 보충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규정기한 만기일에 세금 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1조** 본 방법 제37조, 40조, 45조, 69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세금 징수와 함께 체납금도 동시에 추징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세금납부 기한인15일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본 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세금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매일 체납세금에 대한 체납금을 별도로 추가 징수한다.  **제5장 수출입 화물 세금의**  **감면과 면세**  **제72조** 납세 의무인은 감면세 화물 수출입 시, 화물 수출입 전 규정에 의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감면세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하기 감면세 수출입화물은 감면세 비준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1) 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액이 인민폐 50위엔 미만인 1회 화물  (2) 비즈니스 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제품견본  (3) 통관 전에 파손 또는 손실된 화물  (4) 입, 출국 운송도구에 적재한 운송 도중 필수적인 연료, 자재와 음식물  (5) 기타 감면세 비준을 요하지 않는 감면 또는 면세화물  **제73조** 본 방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화물에 대해 납세 의무인은 세관신고 시 또는 화물통관 일부터 15일 내 세관에 서면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화물 파손정도 관련 검증 증명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화물의 실제 파손정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74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인은 그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심의하고 아울러 징면세증명을 발급한다.  **제75조**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가 있는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의 감독관리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항공기: 8년  (2) 자동차: 6년  (3) 기타화물: 5년  감독관리 연한은 화물의 수입통관일부터 계산한다.  **제76조**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의 감독관리 연한 내 납세의무인은 감면세 화물의 통관 일부터 매년 1회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세관의 허가를 거쳐 동등 세수 우대를 향유하는 기타 기업에 양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인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고 아울러 감독관리 수속 해제후 비로소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연한이 만기되면 세관의 감독관리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감독관리 해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감독관리 연한 만기일부터 1년내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 감독관리 해제 증명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 의무인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 상황을 심사확인하고 아울러 감독관리 해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6장 수출입 화물의 세금담보**  **제77조**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화물의 사전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의 초보적인 납세 확정액에 근거하여 세관에 충분한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세관이 상기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의 징세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감면세 심사수속 중인 경우  (3) 세금 납기 연장을 신청한 경우  (4) 일시적인 수출입인 경우  (5) 보수를 위해 수입되고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경우, 보세화물로 인정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6) 파손, 품질불량 또는 규격 미달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원 수입화물을 상기 반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관에 이양 처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 수출화물을 반입하지 않은 경우  (7)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78조**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금 담보기한은 보통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수권자의 허가를 거쳐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세금 담보는 보통 보증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서야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세금 담보서 보증방식은 연대책임 보증이어야 한다. 세금 담보서에 보증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보증 기한은 세관이 비준한 담보 기한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제79조**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이행 일부터 5일내 세금 담보해제  관련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세관은 담보기한 만기일부터 5일내 보증금을 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세금 담보서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담보기한 만기일부터 6개월 내 또는 세금 담보서에  규정된 보증기간 내 담보인에게 상응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80조** 납세의무자, 담보인은 세관의 납세 의무인 확정, 과세가격, 상품분류 확정, 원산지 확정, 적용세율 또는 과세환율, 세금의 감면 또는 면세, 보충세금, 세금환급, 체납금징수, 세금 산정방식 확정 및 납세장소 확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의 관련 행정 결정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재심의법 실시방법'에 근거하여 상급 세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감독 관리규정 위반행위, 밀수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2조** 보세화물과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보세창고 및 유사한 세관 감독관리 장소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세수관리는 본 방법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83조** 전자데이터 교환방식을 통한 납세신고와 세금납부 관련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84조** 본 방법은 세관 총서에서 해석한다.  **제85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가 공표한 "세관 징세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2005年1月4日海关总署令第124号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证国家税收政策的贯彻实施，加强海关税收管理，确保依法征税，保障国家税收，维护纳税义务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以下简称《关税条例》）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海关征税工作，应当遵循准确归类、正确估价、依率计征、依法减免、严肃退补、及时入库的原则。  **第三条** 进出口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的征收管理适用本办法。  　　进境物品进口税和船舶吨税的征收管理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部门规章的规定执行，有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未作规定的，适用本办法。  **第四条** 海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承担保密义务，妥善保管纳税义务人提供的涉及商业秘密的资料，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不得对外提供。  　　纳税义务人可以书面向海关提出为其保守商业秘密的要求，并且具体列明需要保密的内容，但不得以商业秘密为理由拒绝向海关提供有关资料。  **第二章 进出口货物税款的征收**  **第一节 申报与审核**  **第五条** 纳税义务人进出口货物时应当依法向海关办理申报手续，按照规定提交有关单证。海关认为必要时，纳税义务人还应当提供确定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等所需的相关资料。提供的资料为外文的，海关需要时，纳税义务人应当提供中文译文并且对译文内容负责。  　　进出口减免税货物的，纳税义务人还应当提交主管海关签发的《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以下简称《征免税证明》，格式详见附件1），但本办法第七十二条所列减免税货物除外。  **第六条** 纳税义务人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关于商品归类、审定完税价格和原产地管理的有关规定，如实申报进出口货物的商品名称、税则号列（商品编号）、规格型号、价格、运保费及其他相关费用、原产地、数量等。  **第七条** 为审核确定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等，海关可以要求纳税义务人按照有关规定进行补充申报。纳税义务人认为必要时，也可以主动要求进行补充申报。  **第八条** 海关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的规定，对纳税义务人申报的进出口货物商品名称、规格型号、税则号列、原产地、价格、成交条件、数量等进行审核。  　　海关可以根据口岸通关和货物进出口的具体情况，在货物通关环节仅对申报内容作程序性审核，在货物放行后再进行申报价格、商品归类、原产地等是否真实、正确的实质性核查。  **第九条** 海关为审核确定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完税价格及原产地等，可以对进出口货物进行查验，组织化验、检验或者对相关企业进行核查。  　　经审核，海关发现纳税义务人申报的进出口货物税则号列有误的，应当按照商品归类的有关规则和规定予以重新确定。  　　经审核，海关发现纳税义务人申报的进出口货物价格不符合成交价格条件，或者成交价格不能确定的，应当按照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另行估价。  　　经审核，海关发现纳税义务人申报的进出口货物原产地有误的，应当通过审核纳税义务人提供的原产地证明、对货物进行实际查验或者审核其他相关单证等方法，按照海关原产地管理的有关规定予以确定。  　　经审核，海关发现纳税义务人提交的减免税申请或者所申报的内容不符合有关减免税规定的，应当按照规定计征税款。  　　纳税义务人违反海关规定，涉嫌伪报、瞒报的，应当按照规定移交海关调查或者缉私部门处理。  **第十条** 纳税义务人在货物实际进出口前，可以按照有关规定向海关申请对进出口货物进行商品预归类、价格预审核或者原产地预确定。海关审核确定后，应当书面通知纳税义务人，并且在货物实际进出口时予以认可。  **第二节 税款的征收**  **第十一条** 海关应当根据进出口货物的税则号列、完税价格、原产地、适用的税率和汇率计征税款。  **第十二条** 海关应当按照《关税条例》有关适用最惠国税率、协定税率、特惠税率、普通税率、出口税率、关税配额税率或者暂定税率，以及实施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保障措施或者征收报复性关税等适用税率的规定，确定进出口货物适用的税率。  **第十三条** 进出口货物，应当适用海关接受该货物申报进口或者出口之日实施的税率。  　　进口货物到达前，经海关核准先行申报的，应当适用装载该货物的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实施的税率。  　　进口转关运输货物，应当适用指运地海关接受该货物申报进口之日实施的税率；货物运抵指运地前，经海关核准先行申报的，应当适用装载该货物的运输工具抵达指运地之日实施的税率。  　　出口转关运输货物，应当适用启运地海关接受该货物申报出口之日实施的税率。  　　经海关批准，实行集中申报的进出口货物，应当适用每次货物进出口时海关接受该货物申报之日实施的税率。  　　因超过规定期限未申报而由海关依法变卖的进口货物，其税款计征应当适用装载该货物的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实施的税率。  　　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需要追征税款的进出口货物，应当适用违反规定的行为发生之日实施的税率；行为发生之日不能确定的，适用海关发现该行为之日实施的税率。  **第十四条** 已申报进境并且放行的保税货物、减免税货物、租赁货物或者已申报进出境并且放行的暂时进出境货物，有下列情形之一需缴纳税款的，应当适用海关接受纳税义务人再次填写报关单申报办理纳税及有关手续之日实施的税率：  　　（一）保税货物经批准不复运出境的；  　　（二）保税仓储货物转入国内市场销售的；  　　（三）减免税货物经批准转让或者移作他用的；  　　（四）可以暂不缴纳税款的暂时进出境货物，经批准不复运出境或者进境的；  　　（五）租赁进口货物，分期缴纳税款的。  **第十五条** 补征或者退还进出口货物税款，应当按照本办法第十三条和第十四条的规定确定适用的税率。  **第十六条** 进出口货物的价格及有关费用以外币计价的，海关按照该货物适用税率之日所适用的计征汇率折合为人民币计算完税价格。完税价格采用四舍五入法计算至分。  　　海关每月使用的计征汇率为上一个月第三个星期三（第三个星期三为法定节假日的，顺延采用第四个星期三）中国人民银行公布的外币对人民币的基准汇率；以基准汇率币种以外的外币计价的，采用同一时间中国银行公布的现汇买入价和现汇卖出价的中间值（人民币元后采用四舍五入法保留4位小数）。如果上述汇率发生重大波动，海关总署认为必要时，可以另行规定计征汇率，并且对外公布。  **第十七条** 海关应当按照《关税条例》的规定，以从价、从量或者国家规定的其他方式对进出口货物征收关税。  　　海关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适用税种、税目、税率和计算公式对进口货物计征进口环节海关代征税。  　　除另有规定外，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按照下述计算公式计征：  　　从价计征关税的计算公式为：应纳税额=完税价格X关税税率  　　从量计征关税的计算公式为：应纳税额=货物数量X单位关税税额  　　计征进口环节增值税的计算公式为：应纳税额=（完税价格+实征关税税额+实征消费税税额）X增值税税率  　　从价计征进口环节消费税的计算公式为：应纳税额=〔（完税价格+实征关税税额）/（1－消费税税率）〕X消费税税率  　　从量计征进口环节消费税的计算公式为：应纳税额=货物数量X单位消费税税额  　　第十八条 除另有规定外，海关应当在货物实际进境，并且完成海关现场接单审核工作之后及时填发税款缴款书。需要通过对货物进行查验确定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的，应当在查验核实之后填发或者更改税款缴款书。  　　纳税义务人收到税款缴款书后应当办理签收手续。  **第十九条** 海关税款缴款书一式六联（格式详见附件2），第一联（收据）由银行收款签章后交缴款单位或者纳税义务人；第二联（付款凭证）由缴款单位开户银行作为付出凭证；第三联（收款凭证）由收款国库作为收入凭证；第四联（回执）由国库盖章后退回海关财务部门；第五联（报查）国库收款后，关税专用缴款书退回海关，海关代征税专用缴款书送当地税务机关；第六联（存根）由填发单位存查。  **第二十条** 纳税义务人应当自海关填发税款缴款书之日起15日内向指定银行缴纳税款。逾期缴纳税款的，由海关自缴款期限届满之日起至缴清税款之日止，按日加收滞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纳税义务人应当自海关填发滞纳金缴款书之日起15日内向指定银行缴纳滞纳金。滞纳金缴款书的格式与税款缴款书相同。  　　缴款期限届满日遇星期六、星期日等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的，应当顺延至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之后的第一个工作日。国务院临时调整休息日与工作日的，海关应当按照调整后的情况计算缴款期限。  **第二十一条** 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滞纳金等，应当按人民币计征，采用四舍五入法计算至分。  　　滞纳金的起征点为50元。  **第二十二条** 银行收讫税款日为纳税义务人缴清税款之日。纳税义务人向银行缴纳税款后，应当及时将盖有证明银行已收讫税款的业务印章的税款缴款书送交填发海关验核，海关据此办理核注手续。  　　海关发现银行未按照规定及时将税款足额划转国库的，应当将有关情况通知国库。  **第二十三条** 纳税义务人缴纳税款前不慎遗失税款缴款书的，可以向填发海关提出补发税款缴款书的书面申请。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的申请之日起2个工作日内审核确认并且重新予以补发。海关补发的税款缴款书内容应当与原税款缴款书完全一致。  　　纳税义务人缴纳税款后遗失税款缴款书的，可以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向填发海关提出确认其已缴清税款的书面申请，海关经审查核实后，应当予以确认，但不再补发税款缴款书。  **第二十四条** 纳税义务人因不可抗力或者国家税收政策调整不能按期缴纳税款的，应当在货物进出口前向申报地的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提出延期缴纳税款的书面申请并且随附相关材料，同时还应当提供缴税计划。  　　货物实际进出口时，纳税义务人要求海关先放行货物的，应当向海关提供税款担保。  **第二十五条** 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延期缴纳税款的申请之日起30日内审核情况是否属实，并且作出是否同意延期缴纳税款的决定以及延期缴纳税款的期限。由于特殊情况在30日内不能作出决定的，可以延长10日。  　　延期缴纳税款的期限，自货物放行之日起最长不超过6个月。  　　纳税义务人在批准的延期缴纳税款期限内缴纳税款的，不征收滞纳金；逾期缴纳税款的，自延期缴纳税款期限届满之日起至缴清税款之日止按日加收滞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二十六条** 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经审核未批准延期缴纳税款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通知纳税义务人，并且填发税款缴款书。  　　纳税义务人应当自海关填发税款缴款书之日起15日内向指定银行缴纳税款。逾期缴纳税款的，海关应当自缴款期限届满之日起至缴清税款之日止，按日加收滞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二十七条** 散装进出口货物发生溢短装的，按照以下规定办理：  　　（一）溢装数量在合同、发票标明数量3%以内的，或者短装的，海关应当根据审定的货物单价，按照合同、发票标明数量计征税款。  　　（二）溢装数量超过合同、发票标明数量3%的，海关应当根据审定的货物单价，按照实际进出口数量计征税款。  **第二十八条** 纳税义务人、担保人自缴款期限届满之日起超过3个月仍未缴纳税款或者滞纳金的，海关可以按照《海关法》第六十条的规定采取强制措施。  　　纳税义务人在规定的缴纳税款期限内有明显的转移、藏匿其应税货物以及其他财产迹象的，海关可以责令纳税义务人向海关提供税款担保。纳税义务人不能提供税款担保的，海关可以按照《海关法》第六十一条的规定采取税收保全措施。  采取强制措施和税收保全措施的具体办法另行规定。  **第三章 特殊进出口货物税款的征收**  **第一节 无代价抵偿货物**  **第二十九条** 进口无代价抵偿货物，不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出口无代价抵偿货物，不征收出口关税。  　　前款所称无代价抵偿货物是指进出口货物在海关放行后，因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原因，由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免费补偿或者更换的与原货物相同或者与合同规定相符的货物。  **第三十条** 纳税义务人应当在原进出口合同规定的索赔期内且不超过原货物进出口之日起3年，向海关申报办理无代价抵偿货物的进出口手续。  **第三十一条** 纳税义务人申报进口无代价抵偿货物，应当提交下列单证:  　　（一）原进口货物报关单；  　　（二）原进口货物退运出境的出口报关单或者原进口货物交由海关处理的货物放弃处理证明；  　　（三）原进口货物税款缴款书或者《征免税证明》；  　　（四）买卖双方签订的索赔协议。  　　因原进口货物短少而进口无代价抵偿货物，不需要提交前款第（二）项所列单证。  　　海关认为需要时，纳税义务人还应当提交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原进口货物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的检验证明书或者其他有关证明文件。  **第三十二条** 纳税义务人申报出口无代价抵偿货物，应当提交下列单证:  　　（一）原出口货物报关单；  　　（二）原出口货物退运进境的进口报关单；  　　（三）原出口货物税款缴款书或者《征免税证明》；  　　（四）买卖双方签订的索赔协议。  　　因原出口货物短少而出口无代价抵偿货物，不需要提交前款第（二）项所列单证。  　　海关认为需要时，纳税义务人还应当提交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原出口货物残损、短少、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的检验证明书或者其他有关证明文件。  **第三十三条**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的无代价抵偿货物，与退运出境或者退运进境的原货物不完全相同或者与合同规定不完全相符的，应当向海关说明原因。  　　海关经审核认为理由正当，且其税则号列未发生改变的，应当按照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原进出口货物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算应征税款。应征税款高于原进出口货物已征税款的，应当补征税款的差额部分。应征税款低于原进出口货物已征税款，且原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同时补偿货款的，海关应当退还补偿货款部分的相应税款；未补偿货款的，税款的差额部分不予退还。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的免费补偿或者更换的货物，其税则号列与原货物的税则号列不一致的，不适用无代价抵偿货物的有关规定，海关应当按照一般进出口货物的有关规定征收税款。  **第三十四条** 纳税义务人申报进出口无代价抵偿货物，被更换的原进口货物不退运出境且不放弃交由海关处理的，或者被更换的原出口货物不退运进境的，海关应当按照接受无代价抵偿货物申报进出口之日适用的税率、计征汇率和有关规定对原进出口货物重新估价征税。  **第三十五条** 被更换的原进口货物退运出境时不征收出口关税。  　　被更换的原出口货物退运进境时不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  **第二节 租赁进口货物**  **第三十六条** 纳税义务人进口租赁货物，除另有规定外，应当向其所在地海关办理申报进口及申报纳税手续。  　　纳税义务人申报进口租赁货物，应当向海关提交租赁合同及其他有关文件。海关认为必要时，纳税义务人应当提供税款担保。  **第三十七条** 租赁进口货物自进境之日起至租赁结束办结海关手续之日止，应当接受海关监管。  　　一次性支付租金的，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租赁货物进口时办理纳税手续，缴纳税款。  　　分期支付租金的，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租赁货物进口时，按照第一期应当支付的租金办理纳税手续，缴纳相应税款；在其后分期支付租金时，纳税义务人向海关申报办理纳税手续应当不迟于每次支付租金后的第15日。纳税义务人未在规定期限内申报纳税的，海关按照纳税义务人每次支付租金后第15日该货物适用的税率、计征汇率征收相应税款，并且自本款规定的申报办理纳税手续期限届满之日起至纳税义务人申报纳税之日止按日加收应缴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三十八条** 海关应当对租赁进口货物进行跟踪管理，督促纳税义务人按期向海关申报纳税，确保税款及时足额入库。  **第三十九条** 纳税义务人应当自租赁进口货物租期届满之日起30日内，向海关申请办结监管手续，将租赁进口货物复运出境。需留购、续租租赁进口货物的，纳税义务人向海关申报办理相关手续应当不迟于租赁进口货物租期届满后的第30日。  　　海关对留购的租赁进口货物，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申报办理留购的相关手续之日该货物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应缴纳的税款。  　　续租租赁进口货物的，纳税义务人应当向海关提交续租合同，并且按照本办法第三十六条和第三十七条的有关规定办理申报纳税手续。  **第四十条** 纳税义务人未在本办法第三十九条第一款规定的期限内向海关申报办理留购租赁进口货物的相关手续的，海关除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租期届满后第30日该货物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应缴纳的税款外，还应当自租赁期限届满后30日起至纳税义务人申报纳税之日止按日加收应缴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纳税义务人未在本办法第三十九条第一款规定的期限内向海关申报办理续租租赁进口货物的相关手续的，海关除按照本办法第三十七条的规定征收续租租赁进口货物应缴纳的税款外，还应当自租赁期限届满后30日起至纳税义务人申报纳税之日止按日加收应缴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四十一条** 租赁进口货物租赁期未满终止租赁的，其租期届满之日为租赁终止日。  **第三节 暂时进出境货物**  **第四十二条** 经海关批准暂时进境或者暂时出境的货物，海关按照有关规定实施管理。  **第四十三条** 《关税条例》第四十二条第一款所列的暂时进出境货物，在海关规定期限内，可以暂不缴纳税款。  　　前款所述暂时进出境货物在规定期限届满后不再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申报办理进出口及纳税手续。海关按照有关规定征收税款。  **第四十四条** 《关税条例》第四十二条第一款所列范围以外的其他暂时进出境货物，海关按照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该货物申报进出境之日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按月征收税款，或者在规定期限内货物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时征收税款。  　　计征税款的期限为60个月。不足一个月但超过15天的，按一个月计征；不超过15天的，免予计征。计征税款的期限自货物放行之日起计算。  　　按月征收税款的计算公式为：  　　每月关税税额=关税总额 X（1/60）  　　每月进口环节代征税税额=进口环节代征税总额 X（1/60）  　　本条第一款所述暂时进出境货物在规定期限届满后不再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申报办理进出口及纳税手续，缴纳剩余税款。  **第四十五条** 暂时进出境货物未在规定期限内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且纳税义务人未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申报办理进出口及纳税手续的，海关除按照规定征收应缴纳的税款外，还应当自规定期限届满之日起至纳税义务人申报纳税之日止按日加收应缴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第四十六条** 本办法第四十三条至第四十五条中所称“规定期限”均包括经海关批准的暂时进出境货物延长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的期限。  **第四节 进出境修理货物和出境加工货物**  **第四十七条** 纳税义务人在办理进境修理货物的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出口合同），并且向海关提供进口税款担保或者由海关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进境修理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出境。  　　进境修理货物需要进口原材料、零部件的，纳税义务人在办理原材料、零部件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进境修理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出口合同）、进境修理货物的进口报关单（与进境修理货物同时申报进口的除外），并且向海关提供进口税款担保或者由海关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进口原材料、零部件只限用于进境修理货物的修理，修理剩余的原材料、零部件应当随进境修理货物一同复运出境。  **第四十八条** 纳税义务人在办理进境修理货物及剩余进境原材料、零部件复运出境的出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及进境原材料、零部件的原进口报关单和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出口合同）等单证。海关凭此办理解除修理货物及原材料、零部件进境时纳税义务人提供税款担保的相关手续；由海关按照保税货物实施管理的，按照有关保税货物的管理规定办理。  　　因正当理由不能在海关规定期限内将进境修理货物复运出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说明情况，申请延期复运出境。  **第四十九条** 进境修理货物未在海关允许期限（包括延长期，下同）内复运出境的，海关对其按照一般进出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实施管理，将该货物进境时纳税义务人提供的税款担保转为税款。  **第五十条**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修理货物的出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进口合同）。出境修理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  **第五十一条**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修理货物复运进境的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原出口报关单和维修合同（或者含有保修条款的原进口合同）、维修发票等单证。  　　海关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该货物申报复运进境之日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进口税款。  　　因正当理由不能在海关规定期限内将出境修理货物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说明情况，申请延期复运进境。  **第五十二条** 出境修理货物超过海关允许期限复运进境的，海关对其按照一般进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征收进口税款。  **第五十三条**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加工货物的出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委托加工合同；出境加工货物属于征收出口关税的商品的，纳税义务人应当向海关提供出口税款担保。出境加工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  **第五十四条** 纳税义务人在办理出境加工货物复运进境的进口申报手续时，应当向海关提交该货物的原出口报关单和委托加工合同、加工发票等单证。  　　海关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该货物申报复运进境之日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进口税款，同时办理解除该货物出境时纳税义务人提供税款担保的相关手续。  　　因正当理由不能在海关规定期限内将出境加工货物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说明情况，申请延期复运进境。  **第五十五条** 出境加工货物未在海关允许期限内复运进境的，海关对其按照一般进出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实施管理，将该货物出境时纳税义务人提供的税款担保转为税款；出境加工货物复运进境时，海关按照一般进口货物的征税管理规定征收进口税款。  **第五十六条** 本办法第四十七条至第五十五条中所称“海关规定期限”和“海关允许期限”，由海关根据进出境修理货物、出境加工货物的有关合同规定以及具体实际情况予以确定。  **第五节 退运货物**  **第五十七条** 因品质或者规格原因，出口货物自出口放行之日起1年内原状退货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在办理进口申报手续时，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单证和证明文件。经海关确认后，对复运进境的原出口货物不予征收进口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  **第五十八条** 因品质或者规格原因，进口货物自进口放行之日起1年内原状退货复运出境的，纳税义务人在办理出口申报手续时，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单证和证明文件。经海关确认后，对复运出境的原进口货物不予征收出口关税。  **第四章 进出口货物税款的退还与补征**  **第五十九条** 海关发现多征税款的，应当立即通知纳税义务人办理退税手续。纳税义务人应当自收到海关通知之日起3个月内办理有关退税手续。  **第六十条** 纳税义务人发现多缴纳税款的，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还多缴的税款并且加算银行同期活期存款利息。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还税款及利息时， 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格式详见附件3）；  　（二）原税款缴款书和可以证明应予退税的材料。  **第六十一条** 已缴纳税款的进口货物，因品质或者规格原因原状退货复运出境的，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税。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  　　（二）原进口报关单、税款缴款书、发票；  　　（三）货物复运出境的出口报关单；  　　（四）收发货人双方关于退货的协议。  **第六十二条** 已缴纳出口关税的出口货物，因品质或者规格原因原状退货复运进境，并且已重新缴纳因出口而退还的国内环节有关税收的，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税。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  　　（二）原出口报关单、税款缴款书、发票；  　　（三）货物复运进境的进口报关单；  　　（四）收发货人双方关于退货的协议和税务机关重新征收国内环节税的证明。  **第六十三条** 已缴纳出口关税的货物，因故未装运出口申报退关的，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税。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  　　（二）原出口报关单和税款缴款书。  **第六十四条** 散装进出口货物发生短装并且已征税放行的，如果该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已对短装部分退还或者赔偿相应货款，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还进口或者出口短装部分的相应税款。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  　　（二）原进口或者出口报关单、税款缴款书、发票；  　　（三）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相关检验证明书；  　　（四）已经退款或者赔款的证明文件。  **第六十五条** 进出口货物因残损、品质不良、规格不符原因，或者发生本办法第六十四条规定以外的货物短少的情形，由进出口货物的发货人、承运人或者保险公司赔偿相应货款的，纳税义务人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可以向海关申请退还赔偿货款部分的相应税款。  　　纳税义务人向海关申请退税时，应当提交下列材料：  　　（一）《退税申请书》；  　　（二）原进口或者出口报关单、税款缴款书、发票；  　　（三）已经赔偿货款的证明文件。  **第六十六条** 海关收到纳税义务人的退税申请后应当进行审核。纳税义务人提交的申请材料齐全且符合规定形式的，海关应当予以受理，并且以海关收到申请材料之日作为受理之日；纳税义务人提交的申请材料不全或者不符合规定形式的，海关应当在收到申请材料之日起 5个工作日内一次告知纳税义务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并且以海关收到全部补正申请材料之日为海关受理退税申请之日。  　　纳税义务人按照本办法第六十一条、第六十二条或者第六十五条的规定申请退税的，海关认为需要时，可以要求纳税义务人提供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原进口或者出口货物品质不良、规格不符或者残损、短少的检验证明书或者其他有关证明文件。  　　海关应当自受理退税申请之日起30日内查实并且通知纳税义务人办理退税手续或者不予退税的决定。纳税义务人应当自收到海关准予退税的通知之日起3个月内办理有关退税手续。  **第六十七条** 海关办理退税手续时，应当填发收入退还书（格式详见附件4），并且按照以下规定办理：  　　（一）按照本办法第六十条规定应当同时退还多征税款部分所产生的利息的，应退利息按照海关填发收入退还书之日中国人民银行规定的活期储蓄存款利息率计算。计算应退利息的期限自纳税义务人缴纳税款之日起至海关填发收入退还书之日止。  　　（二）进口环节增值税已予抵扣的，该项增值税不予退还，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  　　（三）已征收的滞纳金不予退还。  　　退还税款、利息涉及从国库中退库的，按照法律、行政法规有关国库管理的规定以及有关规章规定的具体实施办法执行。  **第六十八条** 进出口货物放行后，海关发现少征税款的，应当自缴纳税款之日起1年内，向纳税义务人补征税款；海关发现漏征税款的，应当自货物放行之日起1年内，向纳税义务人补征税款。  **第六十九条** 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造成少征税款的，海关应当自缴纳税款之日起3年内追征税款；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造成漏征税款的，海关应当自货物放行之日起3年内追征税款。海关除依法追征税款外，还应当自缴纳税款或者货物放行之日起至海关发现违规行为之日止按日加收少征或者漏征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造成海关监管货物少征或者漏征税款的，海关应当自纳税义务人应缴纳税款之日起3年内追征税款，并且自应缴纳税款之日起至海关发现违规行为之日止按日加收少征或者漏征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前款所称“应缴纳税款之日”是指纳税义务人违反规定的行为发生之日；该行为发生之日不能确定的，应当以海关发现该行为之日作为应缴纳税款之日。  **第七十条** 海关补征或者追征税款，应当制发《海关补征税款告知书》（格式详见附件5）。纳税义务人应当自收到《海关补征税款告知书》之日起15日内到海关办理补缴税款的手续。  　　纳税义务人未在前款规定期限内办理补税手续的，海关应当在规定期限届满之日填发税款缴款书。  **第七十一条** 根据本办法第三十七、四十、四十五、六十九条的有关规定，因纳税义务人违反规定需在征收税款的同时加收滞纳金的，如果纳税义务人未在规定的15天缴款期限内缴纳税款，海关依照本办法第二十条的规定另行加收自缴款期限届满之日起至缴清税款之日止滞纳税款的滞纳金。  **第五章 进出口货物税款的减征与免征**  **第七十二条** 纳税义务人进出口减免税货物，应当在货物进出口前，按照规定持有关文件向海关办理减免税审批手续。下列减免税进出口货物无需办理减免税审批手续：  　　（一）关税、进口环节增值税或者消费税税额在人民币50元以下的一票货物；  　　（二）无商业价值的广告品和货样；  　　（三）在海关放行前遭受损坏或者损失的货物；  　　（四）进出境运输工具装载的途中必需的燃料、物料和饮食用品；  　　（五）其他无需办理减免税审批手续的减征或者免征税款的货物。  **第七十三条** 对于本办法第七十二条第（三）项所列货物，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时或者自海关放行货物之日起15日内书面向海关说明情况，提供相关证明材料。海关认为需要时，可以要求纳税义务人提供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货物受损程度的检验证明书。海关根据实际受损程度予以减征或者免征税款。  **第七十四条** 除另有规定外，纳税义务人应当向其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批手续。海关按照有关规定予以审核，并且签发《征免税证明》。  **第七十五条** 特定地区、特定企业或者有特定用途的特定减免税进口货物，应当接受海关监管。  　　特定减免税进口货物的监管年限为：  　　（一）船舶、飞机：8年；  　　（二）机动车辆：6年；  　　（三）其他货物：5年。  　　监管年限自货物进口放行之日起计算。  **第七十六条** 在特定减免税进口货物的监管年限内，纳税义务人应当自减免税货物放行之日起每年一次向主管海关报告减免税货物的状况；除经海关批准转让给其他享受同等税收优惠待遇的项目单位外，纳税义务人在补缴税款并且办理解除监管手续后，方可转让或者进行其他处置。  　　特定减免税进口货物监管年限届满时，自动解除海关监管。纳税义务人需要解除监管证明的，可以自监管年限届满之日起1年内，持有关单证向海关申请领取解除监管证明。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的申请之日起20日内核实情况，并且填发解除监管证明。  **第六章 进出口货物的税款担保**  **第七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纳税义务人要求海关先放行货物的，应当按照海关初步确定的应缴税款向海关提供足额税款担保：  　　（一）海关尚未确定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等征税要件的；  　　（二）正在海关办理减免税审批手续的；  　　（三）申请延期缴纳税款的；  　　（四）暂时进出境的；  　　（五）进境修理和出境加工的，按保税货物实施管理的除外；  　　（六）因残损、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纳税义务人申报进口或者出口无代价抵偿货物时，原进口货物尚未退运出境或者尚未放弃交由海关处理的，或者原出口货物尚未退运进境的；  　　（七）其他按照有关规定需要提供税款担保的。  **第七十八条** 除另有规定外，税款担保期限一般不超过6个月，特殊情况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人批准可以酌情延长。  　　税款担保一般应当为保证金、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的保函，但另有规定的除外。  　　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的税款保函，其保证方式应当是连带责任保证。税款保函明确规定保证期间的，保证期间应当不短于海关批准的担保期限。  **第七十九条** 在海关批准的担保期限内，纳税义务人履行纳税义务的，海关应当自纳税义务人履行纳税义务之日起5个工作日内办结解除税款担保的相关手续。  　　在海关批准的担保期限内，纳税义务人未履行纳税义务，对收取税款保证金的，海关应当自担保期限届满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保证金转为税款的相关手续；对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提供税款保函的，海关应当自担保期限届满之日起6个月内或者在税款保函规定的保证期间内要求担保人履行相应的纳税义务。  **第七章 附 则**  **第八十条** 纳税义务人、担保人对海关确定纳税义务人、确定完税价格、商品归类、确定原产地、适用税率或者计征汇率、减征或者免征税款、补税、退税、征收滞纳金、确定计征方式以及确定纳税地点有异议的，应当按照海关作出的相关行政决定依法缴纳税款，并且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行政复议法〉办法》向上一级海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八十一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走私行为的，按照《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二条** 保税货物和进出保税区、出口加工区、保税仓库及类似的海关监管场所的货物的税收管理，按照本办法规定执行。本办法未作规定的，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海关规章的规定执行。  **第八十三条** 通过电子数据交换方式申报纳税和缴纳税款的管理办法，另行制定。  **第八十四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八十五条** 本办法自2005年3月1日起施行。1986年9月30日由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发布的《海关征税管理办法》同时废止。 |